

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222호 1999. 3. 31.

개 정 이 유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의 도급을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완하여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범위를 확대하며,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나.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령 제4조).
- 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령 제14조의2 및 별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2조”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충청북도·충청남도”를 “충청북도”로 하며, 동조제6항제1호중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항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제3조제1항 본문중 “기재된 서류를”을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4항 내지 제6항”을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의 표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	------------------

제12조제4항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1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의3(중전의 제14조의2)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담보의 종류·평가등)”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채납처분의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

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부과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1)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부과점수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100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또는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위반	80
법 제5조(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또는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60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또는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	40

(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별 부과점수

구 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비율(B)	위반행위의 수(C)	과거의 위반전력(D)	
20%초과	4개 이상	과거 1년간 : 5점 초과 과거 3년간 : 8점 초과	100

구 분			부과점수
위반금액의 비율(B)	위반행위의 수(C)	과거의 위반전력(D)	
10%초과 20%까지	3개	과거 1년간 : 4점 초과 5점까지 과거 3년간 : 7점 초과 8점까지	80
5%초과 10%까지	2개	과거 1년간 : 3점 초과 4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 초과 7점까지	60
5%까지	1개	과거 1년간 : 3점까지 과거 3년간 : 6점까지	40

(3) 비교

- (가) 위반행위가 2가지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금액비율은 당해 범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범위반관련 미지급금액(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한다.
- (다)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기준) 당해업체가 받은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합산하고 과거 1년간 또는 3년간의 점수가 2가지 유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유형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직권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의 위반전력 등을 감안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가.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점수 계산방법

$$\text{점수합계}(T) = \text{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A_i) \times 0.4 + \text{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B_i) \times 0.2 + \text{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C_i) \times 0.2 + \text{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D_i) \times 0.2$$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산정

- (1) 나.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한다.
- (2)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주택회보